

#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P3

제출년월일 : 2013. 6. 1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개정 ('12.8.23.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2조~제4조
- 나. 위원의 의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 : 안 제5조~제6조
- 라. 의견청취, 안건심의,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7조~제10조
- 마. 서면심의 및 간사의 역할과 위원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1조~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연 800천원 (80,000원 \* 2회 \* 5명)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3. 5. 08 ~ 5. 28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 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 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등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산림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녹지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녹지과장 윤 하 공
	계 장 직위 · 성명	산림보호계장 김 영 식
	실무관 성명 · 전화	김 학 률 (481-2343)

#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정

의안  
번호

2384

제출년월일 : 2013. 6. //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 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②항 규정에 따라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정의 규정 : (안 제1조).
- 나.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과 단속 공무원의 복장과 용모 규정 : (안 제2조).
- 다. 제복의 종류, 지급 대상 공무원 및 그 외 단속공무원 규정 : (안 제3조).
- 라. 제복 착용 기준 : (안 제4조).
- 마. 제복 종류별 착용 기간 규정 : (안 제5조).
- 바. 단속 담당공무원의 직권 남용 규정 : (안 제7조).
- 사. 제복을 만드는 방법 : (별표).

## □ 제정 조례안 : 아래 참조

##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

## □ 관련사업계획서 : 불임 참조

## □ 예산 수반사항 : 2,914만원 (제1회 추경 예산, 교통특별)

(상록구청 1,289만원, 단원구청 1,625만원)

## □ 사전예고(결과) : 해 당 없 음

## □ 기타 참고사항 : 경찰서 제복 시안에 관한 의견 회신

#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나. 모자

다.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명찰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7월, 8월

2. 동계 : 12월, 1월, 2월

3. 춘·추계 :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 착용하던 단속 공무원의 제복은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 까지 착용한다.

소관 실·과		대중교통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이 창 우  교통지도계장 정 진 섭 (행.2296)

### 3) 모자 및 넥타이

구 분	남 자
색 상	네이비 색
디자인	
소 재	Polyester 100%
제 식	<p>○ 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니셀 IPCT 오바로크(노란색)</li><li>- 여름용 모자 (통풍성 재질)</li><li>- 동절기 귀 보온용 재질 적용</li><li>- 재질 기능성 적용(방한복)</li><li>- 재질 바람막이 형식 적용(공동)</li></ul> 